



시 보



제1603호 2023. 7. 5.(수)

조 례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목포시통합방위협의회운영및구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15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 목포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22
- 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7
- 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2
-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36
-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39
-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3
- 목포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5
-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48
-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4
- 목포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64
- 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67
- 목포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70
-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75
- 목포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 79
- 목포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 83
-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89
-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95

규 칙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99

| | | | | | | | |
|----|--|--|--|--|--|--|--|
| 회람 | | | | | | | |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릉

목포시 조례 제 3693 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만 46세 이상 만 64세 이하”를 “46세 이상 64세 이하”로 한다.

제2조(「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만 24개월”을 “24개월”로 한다.

같은조제3항 중 “만 12개월”을 “12개월”로 한다.

제3조(「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를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한다.

제4조(「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의 개정)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제5조(「목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6조(「목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7조(「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개정)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제8조(「목포시 노인학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노인학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제9조(「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0조(「목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만 6세에서 만12세”를 “6세에서 12세”로 한다.

제11조(「목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12세”를 “12세”로 한다.

제12조(「목포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목포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제다목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3조(「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만 7세”를 “7세”로 한다.

제14조(「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의 개정)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4호 중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제15조(「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제16조(「목포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의 개정) 목포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17조(「목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의 개정) 목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를 “11세 이상 18세 이하”로 한다.

제18조(「목포시 치매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치매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 60세”를 “60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u>만 46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u> 사람을 말한다. | 제2조(정의) ----- ----- ---- <u>46세 이상 64세 이하인</u> 사람을 말한다. |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다만, 입양아는 출생일부터 <u>만 24개월</u> 까지의 입양자녀로 한다. ③ 전입자에 대한 영유아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은 <u>만 12개월</u> 까지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다만, 입양아는 출생일부터 <u>24개월</u> 까지의 입양자녀로 한다. ③ ----- ----- <u>12개월</u> 까지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생략 1. "청년 미취업자"란 노동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 제2조(정의) 생략 1. ----- ----- |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지급대상) ① 제9조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를 둔 <u>만 65세</u>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 제10조(지급대상) ① ----- ----- ----- ---- <u>65세</u>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

**목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u>만 19세</u> |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u>19세</u> 이 |

이상의 사람으로서-----
-----.

상의 사람으로서-----
-----.

**목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청소년”이란 <u>만19세</u> 미만 으로-----.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청소년”이란 <u>19세</u> 미만으 로-----. |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지원대상) 차상위계층 국 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 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 단 목포시 지역 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의 산정 후 보험료가 보건복지 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 대로서 <u>만65세</u> 이상 노인가구로 한다. | 제3조(지원대상) ----- ----- ----- ----- ----- --- <u>65세</u> 이상 노인가구로 한 다. |

**목포시 노인학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u>만 65세</u> 이상의 자를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u>65세</u> 이상의 자를 말한다 |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지원대상) ① <u>만65세</u>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 | 제6조(지원대상) ① <u>65세</u>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 |

**목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① “돌봄 아동”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 | 제2조(정의) ①----- ----- ----- ----- |

학 중인 아동과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6세에서 만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 6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목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공동육아나눔터”란 <u>만 12세</u>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을 소통하며 다른 가족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어울려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p>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공동육아나눔터”란 <u>12세</u> ----- ----- ----- -----.</p> |

목포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7조(사용료 등 감면) (생 략)</p> <p>1. (생 략)</p> <p>2. (생 략)</p> <p> 가 · 나 (생 략)</p> <p>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u>만 65세</u> 이상의 경로우대 대상</p> | <p>제7조(사용료 등 감면)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 가 · 나 (현행과 같음)</p> <p>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u>65세</u> 이상의 경로우대 대상</p> |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생략) 1.~3.(생략) 3. “미취학”은 <u>만7세</u> 이하를 말한다.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3. “미취학”은 <u>7세</u> 이하를 말한다. |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공영버스 요금) ① ~ ④(생략) ⑤ 시장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목포시 관할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버스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 3. (생략) 4. <u>만 6세</u> 이하의 어린이 및 <u>만 65세</u> 이상의 사람 | 제5조(공영버스 요금) ① ~ ④(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목포시 관할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버스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u>6세</u> 이하의 어린이 및 <u>65세</u> 이상의 사람 |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입주자격) 1.~4. (생략) 5. <u>만65세</u> 이상 고령자 중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제1 | 제4조(입주자격) 1.~4. (현행과 같음) 5. <u>65세</u> 이상 ----- ----- |

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목포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u>만 19세</u>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 <u>19</u> <u>세</u>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목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목포시장은----- <u>만 11세 이상</u> <u>만18세</u> 이하의 여성청소년----- -----.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목포시장은----- <u>11세 이상 18</u> <u>세</u> 이하의 여성청소년----- -----. |

**목포시 치매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초로기치매”란 <u>만 60세</u>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 다.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초로기치매”란 <u>60세 미</u> 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등 (제5조 관련)

1. 시설물 사용료

| 구 분 | 기간별 | 단 위 | 금 액 | 비 고 |
|-----|----------|-----|--------|--------------|
| 3㎡ | 해수욕장개장기간 | 1일 | 9,000원 | 3㎡미만은 3㎡로 계산 |

※ 외달도 해수풀장에 한 한다.

2. 샤워장 및 탈의실 이용료

| 구 분 | 단 위 | 금 액 | 비 고 |
|-----|-----|-----|--------|
| 샤워장 | 어 른 | 1명 | 1,000원 |
| | 어린이 | 1명 | 500원 |

해수풀장 입장객
면제

- 주) 1. “어른”은 성인, 군인,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청소년을 말한다.(65세이상 무료)
 2. “어린이”는 초등학생 이하를 말한다. (6세이하 무료)

3. 해수풀장 입장료

| 구 분 | 요 금 | 비 고 |
|-------|--------|-----------------------------|
| 입 장 료 | 일 반 | |
| | 대인 | |
| | 소인 | 2,000원 |
| | 할인대상 | 단체, 장애인,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
| 대인 | 2,000원 | |
| | 소인 | 1,000원 |

- 주) 1. “대인”은 성인,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청소년을 말한다.
 2. “소인”은 3세(36개월)이상 13세(초등학교 6학년)미만을 말한다. (3세 미만은 무료)
 3. “장애인”, “국가유공자”라 함은 장애인증 및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
 4. “경로우대”라 함은 주민등록증 또는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자로 한한다.
 5. “단체”라 함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목포시통합방위협의회의운영및구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른

목포시 조례 제 3694 호

목포시통합방위협의회의운영및구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통합방위협의회의운영및구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목포시통합방위협의회의운영및구성에관한조례”를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제2조제2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제4호로 한다.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제3조제2항제4호 중 “목포출장소장”을 “광주지부 목포지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제9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목포지점장”을 “목포본부장”으로 한다.

6. 국군 제331방첩부대 방첩대장

9. 목포해양경찰서장

13. 전남서부보훈지청장

제7조제1호 중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을 “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u>목포시통합방위협의회운영및구성 에관한조례</u></p> <p>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 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p> <p>1. <u>통합방위 대비책</u></p> <p>2. <u>통합방위작전 · 훈련의 지원 대책</u> 가. · 나. (생략)</p> <p><u><신 설></u> <u><신 설></u></p> <p>3. (생략)</p> <p>5. <u>통제구역 설정</u></p> <p>6. <u>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 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 천</u></p> <p>7. (생략)</p> <p>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p> | <p style="text-align: center;"><u>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u></p> <p>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 -----.</p> <p>1. <u>통합방위 대비책</u> <u>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 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 책</u></p> <p>2. -----</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다. <u>취약지역 대비책</u></p> <p>라. <u>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방 위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u></p> <p>3. (현행과 같음)</p> <p><u><삭 제></u> <u><삭 제></u></p> <p>4. (현행 제7호와 같음)</p> <p>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p> |

① (생략)

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1. ~ 3. (생략)
- 4. 국가정보원 목포출장소장
- 5. (생략)
- 6. 목포기무대장

- 7.·8. (생략)
- 9. 목포해양경비안전서장
- 10. ~ 12. (생략)
- 13. 목포보훈지청장
- 14. 한국은행 목포지점장
- 15.·16. (생략)

③·④ (생략)

제7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운영 할 수 있다.

-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 2.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 4. ----- 광주지부 목포지역 본부장
- 5. (현행과 같음)
- 6. 국군 제331방첩부대 방첩대장

- 7.·8. (현행과 같음)
- 9. 목포해양경찰서장
- 10. ~ 12. (현행과 같음)
- 13. 전남서부보훈지청장
- 14. ----- 목포본부장
- 15.·16.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협의회의 통합·운영) ---

-----.

-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
- 2. (현행과 같음)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른

목포시 조례 제 3695 호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6조 본문 중 “**의과대학지원심의위원회**”를 “**의과대학유치추진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호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를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주
요 정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를 “**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대내외
홍보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11명 이내”를 “20명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소속 부서의 국장”을 “소관업무 담당 과(단)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 “대학·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를 “국회의원, 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경제계, 의료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한다.

제7조제4항 본문 중 “교육업무 담당 과장”을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목포대학교 <u>의과대학지원심의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u>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u></p> <p>2. <u>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u></p> <p>3. (생략)</p> <p>제7조 (위원회 구성)</p> <p>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u>11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u>소속부서의 국장</u>으로 한다.</p> <p>1. (생략)</p> <p>2. <u>대학·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u> 의과대학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3. (생략)</p> <p>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u>교육업무 담당 과장</u>으로 한다.</p> | <p>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u>의과대학유치추진위원회</u>-----.</p> <p>1. <u>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u></p> <p>2. <u>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대내외 홍보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u></p> <p>3. (현행과 같음)</p> <p>제7조 (위원회 구성)</p> <p>① -----<u>20명</u> <u>이상</u>-----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소관업무 담당 과(단)장</u>-----.</p> <p>1. (현행과 같음)</p> <p>2. <u>국회의원, 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경제계, 의료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u> ----- ----- -----</p> <p>3. (현행과 같음)</p> <p>④ ----- -----, -----<u>소관업무 담당 팀장</u>-----.</p> |

목포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릉

목포시 조례 제 3696 호

목포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예산제”란 특정 성에 치우침이 없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예산”이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특정 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성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성인지결산”이란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특정 성에 치우침 없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4. “성인지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기술·지식 등을 말한

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성평등 목표,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편성·집행·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4조(중점 관리 사업) 시장은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 관리 사업으로 선정·관리할 수 있다.

1. 「목포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목포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
4. 성인지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5. 성평등 목표와 관련된 사업

제5조(성과지표 관리) 시장은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성인지예산제를 성과관리 자체평가 중 부서 지표로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지침서 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예산 편성·결산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목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과 「목포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성별 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예산제가 운용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침서가 성평등 정책의 기본목표, 추진 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점검하고 그 의견들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7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목포시 성인지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들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목포시 양성평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에 따른 중점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3. 성인지예산의 양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4. 성인지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5. 성인지예산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6. 성인지결산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7. 성평등 향상 및 성인지예산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대안 정책 발굴
8.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 3분의 1 이상이 되게 구성한다.

1. 예산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성인지예산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성인지예산제 관련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성인지 예산 업무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제9조의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주제별 또는 소관 부서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채택된다.

제16조(교육 과정 운영)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관련 관계자가 성평등의 목표, 수혜자 설정, 성과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이해할수 있도록 제6조에 따른 지침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기본 또는 심화 연수과정 등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시민 참여 및 지원) ① 시민은 성인지 예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하여 성인지예산제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추진상황 공개) 시장은 성인지예산제 운용의 투명성 강화와 성과 향상을 위하여 시민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시 홈페이지에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에 성과 또는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성인지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방안 마련 등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성인지예산의 수립 및 결산에 필요한 조사·연구·평가 등의 업무와 제6조에 따른 지침서의 제작을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릉

목포시 조례 제 3697 호

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시민 등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목포시(이하“시”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 중 대강당, 회의실, 강의실, 다목적실 등 개방이 가능하여 목포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개방공간에 대해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등 공공시설 관리자의 이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여 이용하는 개인과 단체를 말한다.
4. “공공시설 관리자”란 개별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허가의 관리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5. “이용”이란 이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교육,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공연,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6. “사용료”란 개방공간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이용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 관리자의 책무)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및 관리해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시설의 개방) ① 공공시설 관리자는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 등에게 개방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시민 등에게 개방하려는 공공시설의 공간 및 개방시간 등 개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③ 공공시설 관리자는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 개방시간, 사용료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격)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목포시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3. 목포시에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7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이용신청을 하는 자는 해당 공공시설 관리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용일로부터 30일 전부터 5일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③ 공공시설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으면 허가를 해야 하며,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용 목적, 이용 시간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개방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시설 관리자가 정한다.

제8조(이용허가 제외) 공공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1.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주된 목적이 사적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계속이용의 제한) 공공시설 관리자는 시민 등의 균등한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이용자의 등의 계속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이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공공시설 관리자는 이용허가 이후 이용자에게 제8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이용목적에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이용허가 이후 반복적인 취소행위로 다른 사람의 이용을 제한한 경우
5. 그 밖에 공공시설 관리자가 시민의 안전 및 공공시설 관리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징수 등) ① 공공시설 관리자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개방공간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개방공간의 사용료 및 감면 사유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이용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민화합 및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공간 이용이 취소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예고되지 않은 긴급한 업무수행 또는 공공행사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자가 이용취소를 한 경우 이용일 3일 전까지 전액 반환, 이용일 2일 전 90% 반환, 이용일 전일 80% 반환, 이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다만,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하거나 제10조에 해당되어 시장이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등) ①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해 이용약관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공시설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지시를 이용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 개방공간의 이용을 금지·제한할 수 있다.

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개방공간의 시설 등이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는 원상복구의무를 지며,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제14조(이용허가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에 대한 이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단체에 양도(讓渡)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15조(준용) 사용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 회계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릉

목포시 조례 제 3698 호

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에 거주하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

인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사망자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소외·단절된 1인 가구를 위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및 사업 운영
6. 반찬 및 식음료품 지원
7.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0. 일자리 알선
11.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및 활동 지원
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립

목포시 조례 제 3699 호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다. 부양의무자와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사람

2.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항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홀로 사는 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관내 사회복지기관,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①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시 관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독거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8조(지원사항)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1. 지원대상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제공
2.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을 통한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지원대상자가 위독 시 긴급의료비 지원
4. 지원대상자 가정에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등 안전 확인을 위한 장치의 설치 및 서비스 제공
5. 재난·재해 발생 시 경로당 등 임시주거시설 지원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비용환수 등에 관해서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릉

목포시 조례 제 3700 호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를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8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4명(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명 포함)”을 “4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촉직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중 “하되 연임할”을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결을 거쳐 해촉”을 “위원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망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9조제2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 및 축제추진위원 시의회 의원 4명 중 1명”으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문의 개정규정 시행 전 위촉된 위원은 현재 1회차 임기를 수행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6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 4. (생략)

제9조(기획실무위원회)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생략)

<부칙 신설>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

-----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해촉) -----

----- 위원을 위촉 해제-----.

1. 사망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 4. (현행과 같음)

제9조(기획실무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위원장 및 축제추진위원 시의회 의원 4명 중 1명-----
-----.

③ (현행과 같음)

제2조(경과조치)
본문의 개정규정 시행 전 위촉된 위원은 현재 1회차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2023년 7월 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립

목포시 조례 제 3701 호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실시하며”를 “실시할 시,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포함하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4조(시장의 책무) ①·② (생략)</p> <p>③ 시장은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해설사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며, 시 소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교육을 추가로 실시 할 수 있다.</p> <p>④ (생략)</p> | <p>제4조(시장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실시할 시, <u>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포함하며</u>----- -----.</p> <p>④ (현행과 같음)</p> |

목포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릉

목포시 조례 제 3702 호

목포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목포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목포시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등)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

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3조 제1항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운영비 지원은 지정스포츠클럽에 한정한다.
- ③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감면은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및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조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등) ① 시장은 제6조의 지도·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환수 제재부과금 부과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3일

목 포 시 장 박 흥 른

목포시 조례 제 3703 호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수익성이 낮은 항로”를 “야간·증회운항 및 수익성이 낮은 항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증회운항”이란 여객선이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섬 주민의 편의를 위해 횡수를 늘려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7. “야간운항”이란 여객선이 일몰 전의 정규 운항시간 외에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일몰 후 일정한 시간에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운영 지원)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선이 시의 요청에 따라 증회운항·야간운항 등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여객선사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해당 여객선사에게 월별로 지급한다.

제4조(중전의 제3조) 제1항 본문 중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 “시장”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청하였으나 국가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를 “신청하고 국가지원에서 미지원된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4조) 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5조)의 제목 “(운항결손액 지원 중단)”을 “(지원 중단)”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에 따라 운항결손액을 지원받은 여객선과 관련하여 다음”을 “다음”으로, “운항결손액 지원”을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으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제2호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8조) 중 “제6조부터 제7조”를 “제7조부터 제8조”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0조) 중 “제9조”를 “제10조”로, “운항결손액”을 “지원금”으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1조) 중 “선사”를 “여객선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지원항로사업자”(이하 “지원사업자”라 한다)란 <u>수익성이 낮은 항로를 운영하기 위하여 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여객선사를 말한다.</u></p> <p>5.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 <p>제2조(정의)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u>야간·증회운항</u> <u>및 수익성이 낮은 항로</u>----- -----.</p> <p>5. (현행과 같음)</p> <p>6. “<u>증회운항</u>”이란 여객선이 <u>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섬 주민의 편의를 위해 횡수를 늘려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u></p> <p>7. “<u>야간운항</u>”이란 여객선이 <u>일몰 전의 정규 운항시간 외에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일몰 후 일정한 시간에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u></p> <p>제3조(운영 지원) ① <u>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선이 시의 요청에 따라 증회운항·야간운항 등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여객선사에게 지원할 수</u></p> |

1. ~ 3. (생략)

제6조(지원사업자의 의무)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11조에 따라 체결한 협약의 준수

3. · 4.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제6조부터 제7조까지의 위반 및 협약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여객에 대한 서비스 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지원사업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 (생략)

제10조(시정요구 등)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 운항결손액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등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체결) 시장은 지원을 위한 조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사업자의 의무) -----

-----.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

3. · 4. (현행과 같음)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9조(지도·감독) ----- 제7조
부터 제8조-----

-----.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1조(시정요구 등) ----- 제10조----- 지
원금-----

-----.

제12조(협약체결) -----

----- 여객선사-----
-----.

제12조 · 제13조 (생략)

제13조 · 제14조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릉

목포시 조례 제 3704 호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을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로 하고,
제2조 제4호 전단 중 “사업장폐기물”을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 ①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규칙 제16조의3제2항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대규모 행사, 각종 재난 등 일시적으로 다량의 폐기물이 배출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적재중량 1.5톤 미만 차량 또는 특수장비(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노면청소차량, 암롤차량, 음식물전용수거차량 등)를 사용하여 수거하는 경우
3. 그 밖의 작업 시간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 제1항 전단 중 “쓰레기봉투는 생활폐기물을 담는 일반용 봉투와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담는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되”를 “쓰레기봉투는 생활폐기물을 담는 일반용 봉투·재사용 봉투와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을 담는 불연성 봉투(이하 “판매용 봉투”라 한다.), 도로변·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담는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로 하고,

제9조 제2항 중 “일반봉투의 색상은 흰색, 공공용봉투의 색상은 옅은 청색”을 “색상은 일반용·재사용 봉투는 흰색 또는 청록색, 불연성 봉투는 투명색, 공공용 봉투는 옅은청색”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후단 중 “별표 4,5”를 “별표4, 5, 8, 9”로 한다.

제10조 제1항,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일반용봉투”를 “판매용 봉투”로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 후단 중 “일반용 쓰레기 봉투”를 “판매용 봉투”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판매용 봉투판매소”로 한다.

제16조 제1항 전단 중 “일반용봉투(타시·군 포함)”을 “판매용 봉투”로 한다.

제18조 제1항 전단 중 “소매업(직접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을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으로 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별지]

[별표4]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
(제 9조 관련)

| 구분 | 봉투 용량 | 높이 (cm) | 나비 (cm) | 두께 | 입구에서 담는선까지 | 묶는 끈폭 | 묶는 끈길이 | 손잡이 끈 폭(cm) |
|------------|----------|------------|----------------|-------|---------------|----------|-----------|-------------------|
| 일반용 | 5ℓ | 46.5 | 26 | 0.025 | 13.2 | 6 | 10 | - |
| 재사용 봉투 | 5ℓ | 41.5 | 32 (16+8×2) | 0.025 | 14.2 | 5 | 10 | 4 |
| 불연성 봉투 | 5ℓ | 46.5 | 26 | 0.090 | 13.2 | 6 | 10 | - |
| 일반용 | 10ℓ | 56.5 | 33 | 0.025 | 15.5 | 7 | 12 | - |
| 재사용 봉투 | 10ℓ | 53.5 | 36 (24+6×2) | 0.025 | 16.5 | 7 | 12 | 5 |
| 불연성 봉투 | 10ℓ | 56.5 | 33 | 0.090 | 15.5 | 7 | 12 | - |
| 일반용 | 20ℓ | 69.5 | 42 | 0.030 | 18.4 | 8 | 15 | - |
| 재사용 봉투 | 20ℓ | 65.3 | 45 (31+7×2) | 0.030 | 19.3 | 8 | 15 | 6 |
| 불연성 봉투 | 20ℓ | 69.5 | 42 | 0.090 | 18.4 | 8 | 15 | - |
| 일반용 | 30ℓ | 78.5 | 48 | 0.035 | 20.3 | 10 | 17 | - |
| 공공용 일반용 | 50ℓ | 91.5 | 56 | 0.040 | 22.8 | 12 | 19 | - |
| 공공용 일반용 | 75ℓ | 103.5 | 65 | 0.045 | 25.7 | 14 | 21 | - |

[별표9]

불연성종량제봉투 제작사양(제9조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목포시

불연성종량제봉투(20ℓ)

1. 이 봉투는 타지 않는 쓰레기 전용 봉투입니다.

● 불연성 생활쓰레기 ●

유리류(꽃병, 유리, 거울 등), 자기류(사기 그릇, 화분, 도자기 등), 타일 등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폐기물

2. 종량제봉투(일반용, 재사용)와 구분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에 음식물 등을 혼합하여 배출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쓰레기봉투 배출시간은 일몰후 일출전까지입니다.

목포시장

연락처: 목포시청 자원순환과(☎270-8561)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용어의 정의)</p> <p>1. ~ 2. (생략)</p> <p>3. “사업장폐기물” 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영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p> <p>4. “사업장폐기물” 이라 함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p> <p><신 설></p> | <p>제2조(용어의 정의)</p> <p>1. ~ 2. (현행과 같음)</p> <p>3</p> <p>-----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p> <p>-----</p> <p>4. “사업장생활계폐기물”</p> <p>-----</p> <p>제5조의4(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p> <p>①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규칙 제16조의3제2항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p> <p>1. 대규모 행사, 각종 재난 등 일시적으로 다량의 폐기물이 배출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2. 적재중량 1.5톤 미만 차량 또는 특수장비(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노면청소차량, 암롤차량, 음식물전용수거차량 등)를 사용하여 수거하는</p> |

| | 경우 |
|--|--|
| <p>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p> <p>① 쓰레기봉투는 생활폐기물을 담는 일반용 봉투와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담는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되, 봉투전면에 목포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목포시의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광고표기를 할 수 있다.</p> <p>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봉투의 색상은 흰색, 공공용봉투의 색상은 옅은청색으로 한다.</p> <p>③ 쓰레기 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중소기업청 단체표준에 의하고 제작사양은 별표 4,5와 같이 한다.</p> <p>④ ~ ⑦ (생략)</p> | <p>3. 그 밖의 작업 시간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p> <p>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p> <p>① 쓰레기봉투는 생활폐기물을 담는 일반용 봉투·재사용 봉투와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을 담는 불연성 봉투(이하 “판매용 봉투”라 한다.), 도로변·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담는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 ----- ----- ----- ----- ----- -----</p> <p>② -----, 색상은 일반용·재사용 봉투는 흰색 또는 청록색, 불연성 봉투는 투명색, 공공용 봉투는 옅은 청색-----</p> <p>③ ----- ----- -----별표 4 ,5, 8, 9-----</p> <p>④ ~ ⑦ (현행과 같음)</p> |
| <p>제10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p> <p>① 일반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업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은 부여할 수 있다.</p> | <p>제10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p> <p>① 판매용 봉투는 ----- ----- ----- -----</p> |

② ~ ④ (생략)

제12조(수수료의 부과기준)

①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2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집 수수료는 일반용 쓰레기 봉투 가격으로 한다.

2. ~ 3. (생략)

② ~ ③ (생략)

제1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5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수수료의 부과기준)

① -----

1. -----
-----판매용 봉투-----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

-----판매용 봉투판매소-----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수수료의 감면)

① -----
-----판매용 봉투-----

② -----판매용 봉투-----

니된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 시장은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봉투(타 시·군 포함)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8조(봉투판매인의 지정)

① 쓰레기봉투의 소매업(직접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략)

[별표 4]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
(제9조 관련)

| 구분 | 봉투 용량 | 높이 (cm) | 나비 (cm) | 두께 | 입구에서 닿는선까지 | 묶는 끈폭 | 묶는 끈길이 | 손잡이 끈 폭(cm) |
|--------|-------|---------|----------------|-------|------------|-------|--------|-------------|
| 일반용 | 5ㄹ | 46.5 | 26 | 0.025 | 13.2 | 6 | 10 | - |
| 재사용 봉투 | 5ㄹ | 41.5 | 32 (16+8×2) | 0.025 | 14.2 | 5 | 10 | 4 |
| 불연성 봉투 | 5ㄹ | 46.5 | 26 | 0.090 | 13.2 | 6 | 10 | - |
| 일반용 | 10ㄹ | 56.5 | 33 | 0.025 | 15.5 | 7 | 12 | - |
| 재사용 봉투 | 10ㄹ | 53.5 | 36 (24+6×2) | 0.025 | 16.5 | 7 | 12 | 5 |
| 불연성 봉투 | 10ㄹ | 56.5 | 33 | 0.090 | 15.5 | 7 | 12 | - |
| 일반용 | 20ㄹ | 69.5 | 42 | 0.030 | 18.4 | 8 | 15 | - |
| 재사용 봉투 | 20ㄹ | 65.3 | 45 (31+7×2) | 0.030 | 19.3 | 8 | 15 | 6 |
| 일반용 | 30ㄹ | 78.5 | 48 | 0.035 | 20.3 | 10 | 17 | - |
| 공공용 | 50ㄹ | 91.5 | 56 | 0.040 | 22.8 | 12 | 19 | - |

제16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 -----판매용 봉투-----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봉투판매인의 지정)

①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② ~ ④ (현행과 같음)

[별표 4]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
(제 9조 관련)

| 구분 | 봉투 용량 | 높이 (cm) | 나비 (cm) | 두께 | 입구에서 닿는선까지 | 묶는 끈폭 | 묶는 끈길이 | 손잡이 끈 폭(cm) |
|--------|-------|---------|----------------|-------|------------|-------|--------|-------------|
| 일반용 | 5ㄹ | 46.5 | 26 | 0.025 | 13.2 | 6 | 10 | - |
| 재사용 봉투 | 5ㄹ | 41.5 | 32 (16+8×2) | 0.025 | 14.2 | 5 | 10 | 4 |
| 불연성 봉투 | 5ㄹ | 46.5 | 26 | 0.090 | 13.2 | 6 | 10 | - |
| 일반용 | 10ㄹ | 56.5 | 33 | 0.025 | 15.5 | 7 | 12 | - |
| 재사용 봉투 | 10ㄹ | 53.5 | 36 (24+6×2) | 0.025 | 16.5 | 7 | 12 | 5 |
| 불연성 봉투 | 10ㄹ | 56.5 | 33 | 0.090 | 15.5 | 7 | 12 | - |
| 일반용 | 20ㄹ | 69.5 | 42 | 0.030 | 18.4 | 8 | 15 | - |
| 재사용 봉투 | 20ㄹ | 65.3 | 45 (31+7×2) | 0.030 | 19.3 | 8 | 15 | 6 |
| 불연성 봉투 | 20ㄹ | 69.5 | 42 | 0.090 | 18.4 | 8 | 15 | - |
| 일반용 | 30ㄹ | 78.5 | 48 | 0.035 | 20.3 | 10 | 17 | - |

| | | | | | | | | | |
|------------------|------------------|------------------|------------------|------------------|------------------|------------------|------------------|------------------|------------------|
| 연 안 반 용 |
| 75 | 103.5 | 65 | 0.045 | 25.7 | 14 | 21 | - | | |

| | | | | | | | | | |
|------------------|------------------|------------------|------------------|------------------|------------------|------------------|------------------|------------------|------------------|
| 연 안 반 용 |
| 50 | 91.5 | 56 | 0.040 | 22.8 | 12 | 19 | - | | |
| 75 | 103.5 | 65 | 0.045 | 25.7 | 14 | 21 | - | | |

<신 설>

[별표 9]

불연성종량제봉투 제작사양(제9조 관련)



목포시

불연성종량제봉투(20ℓ)

1. 이 봉투는 타지 않는 쓰레기 전용 봉투입니다.

● 불연성 생활쓰레기 ●

유리류(꽃병, 유리, 거울 등), 자기류(사기 그릇, 화분, 도자기 등), 타일 등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폐기물

2. 종량제봉투(일반용, 재사용)와 구분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에 음식물 등을 혼합하여 배출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쓰레기봉투 배출시간은 일몰후 일출전까지입니다.

목포시장

연락처: 목포시청 자원순환과(☎270-8561)

목포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른

목포시 조례 제 3705 호

목포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에 따라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과 동시에, 희생자 추모를 통한 인간 존엄과 안전사회 건설에 대한 시민 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의 추모와 안전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

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증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을 위한 계획(이하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시책의 과제 및 시행방법
3. 시책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
4.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계획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추모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추모의 날 행사 및 희생자 추모사업
2.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억 공간 조성·운영
3.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목포 신항 세월호 안내 센터 운영
4.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
5. 그 밖에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 시장은 제6조의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릉

목포시 조례 제 3706 호

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풍수해 대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에 적극 협

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등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현장에 맞게 적정규모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릉

목포시 조례 제 3707 호

목포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따른 목포시 관내에서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사고”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해당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를 말한다.
2. “사고조사”란 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사고의 원인 규명, 보고서 작성, 유사사고의 방지 대책을 관계 기관에 권고 또는 건의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의 관계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가 발주하거나 인·허가한 건설공사로서 시 관내에서 발생한 모든 중대사고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중대사고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고조사)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사고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고조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을 사고조사요원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대사고 조사를 위해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고조사요원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고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고조사요원은 조사활동을 종료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조사결과는 유사 사고예방 및 중대사고 경각심 고취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사고현장의 협조의무) 중대사고가 발생한 사고현장의 관계인은 자료제출, 의견청취, 현장출입 등의 조사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2차 피해발생 예방 조치) 시장은 사고조사 결과 2차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중대사고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
2. 사고발생 위험요인 제거
3. 보수 또는 보강 등의 긴급정비
4. 그 밖에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제8조(중대사고 재발방지 대책수립 권고) 시장은 사고분석 결과를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중대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설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고조사의 공정성 확보 및 전문지식 활용 등을 위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사고조사 등 임무 완수시 해산한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발주부서 또는 인·허가부서의 장으로 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중대사고 발생현황 등을 참고하고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 시의회 의원
3.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4. 건설기술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건설기술 관련 업체(건설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을 말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사고조사 중 전문분야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11조(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시장은 위원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고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고의 당사자와 친족, 가족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고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에 소속된 경우

4. 위원이 사고현장과 관련하여 공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그 업무를 수행한 법인에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중대사고 조사를 명확하고 공정하게 실시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출석위원의 의결로 간주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인시험, 분석 등에 들어간 비용은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증표) ① 시장은 위원에게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위촉은 제1항의 증표로 갈음하며 조사 완료, 해촉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이 증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릉

목포시 조례 제 3708 호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차장 운영시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신고·접수한 날로부터 2주일 이상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견인 조치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주차거부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하고 견인 조치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견인대행업자에게 차량의 견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인 비용은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가 견인대행업자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견인대행업자에게 견인 업무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견인대행업자는 대행 업무 수행과정에서 피견인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

상하여야 한다.

④ 견인된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견인 비용 등을 전부 납부한 후에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견인 비용 산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 표준운임표에 따르며, 견인 차량의 매각 또는 폐차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견인대행업자에게 견인 업무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견인대행업자는 대행 업무 수행과정에서 피견인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견인된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견인 비용 등을 전부 납부한 후에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견인 비용 산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 표준운임표에 따르며, 견인 차량의 매각 또는 폐차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준용한다.

목포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릉

목포시 조례 제 3709 호

목포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

목포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사 편찬을 위한 목포시사편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사(이하 “시사”라 한다) 편찬에 필요한 자문, 심의 및 지원을 위해 목포시에 목포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사 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심의
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3. 시사 수록 사항의 결정 및 원고의 심의
4. 그 밖에 시장이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목포시 소속 공무원과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시사편찬 발간 완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상임위원 등) ① 시사편찬 업무를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 1명과 2명 이내의 보조원을 둘 수 있다.

- ② 상임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보조원은 상임위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 ③ 상임위원은 시사편찬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기획하고 자료수집, 집필, 감수, 교정, 편집 업무를 일정별, 단계별로 책임 관장한다.
- ④ 상임위원 및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일반직 공무원 직급에 해당하는 월정액의 보수 및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상임위원 : 5급 1호봉 상당
 2. 보조원 : 7급 1호봉 상당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로 본다.

제8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시사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사편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③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자료제출요구) 위원장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사편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시사편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사편찬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으로 공무상 출장할 때에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시사편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사편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사편찬 목적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5조의 상임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릉

목포시 조례 제 3710 호

목포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

목포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2조의3에 따라 목포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시민의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자”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헌혈권장 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 장려”란 헌혈권장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시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시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 장려사업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사업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목포시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회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회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목포시의회의원
2.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보건·의료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시민

제6조(협회의 기능) 협회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및 장려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대책 마련
4. 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
5.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
6. 헌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홍보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회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질병이 있거나 6개월 이상 해외장기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관련 업무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3조(헌혈 장소의 설치·관리)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요청할 경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목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14조(헌혈홍보) 시장은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

용하여 시민에게 헌혈관련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2.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버스정류장, 여객선터미널 등 홍보매체
4.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5.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15조(헌혈자 및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 제6조에 따른 혈액 관리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전혈,혈소판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가. 1만원 이내의 지역상품권(온누리 또는 목포사랑) 지급

나. 목포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 감면

2. 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연간 3회이상 헌혈(전혈,혈소판성분헌혈) 또는 12회 이상 헌혈(혈장성분헌혈)을 한 사람과 헌혈 장려사업에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의 포상

제16조(관련정보의 제공 등) 시장은 헌혈 장려사업과 헌혈 제공 적합지역 등에 관한 최신 정보가 시민에게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3일

목 포 시 장 박 흥 료

목포시 조례 제 3711 호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전기시설”을 “전시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영상관”을 “공룡알등지화석관, 기증품전시실”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관람료의 감액) ① 목포시 관광지 및 관광시설에 관한 입장료, 관람료 등의 통합이용권을 발행할 경우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다.

②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 내 기초 자치단체의 관광축제 및 행사 등과 연계하여 우리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지역관광 패키지 상품 및 플랫폼 개발 운영 시 협약을 통하여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9호 중 “취약”을 “취학”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을 “자원봉사자 및 도슨트 모집 및 운

용”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을 “(자원봉사자 및 도슨트 모집 및 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자원봉사자”를 각각 “자원봉사자 및 도슨트”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을 “(자원봉사자 및 도슨트 실비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원봉사자”를 “자원봉사자 및 도슨트”로 한다.

별표 1의 청소년 · 군인의 비고란 중 “군인 및 전투경찰 순경, 경비교도”를 “군인”으로 하고, 같은 표 단서 중 “신분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 한다”을 “신분증서를 제시한 경우로 나이계산 기준은 관람년도-출생년도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설치)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아래와 같다.</p> <p>1.·2. (생략)</p> <p>3. 기능 : 자연사·인문사·도자사 자료의 취득과 관리, <u>전기시설</u>의 관리 및 관람객을 위한 개방 또는 전시품에 대한 연구·조사·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p> <p>② 박물관 전시시설은 자연사관, 문예역사관, 생활도자박물관으로 구분하며, 각 관별 설치 전시실은 다음과 같다.</p> <p>1. 자연사관 : 중앙홀, 지질관, 육상생명관, 수중생명관, 지역생태관, 기획전시실, <u>영상관</u></p> <p>2.·3. (생략)</p> <p><u><신 설></u></p> | <p>제2조(설치) ①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u>전시시설</u>----- ----- -----</p> <p>② ----- ----- ----- -----.</p> <p>1. ----- ----- ----- <u>공룡알둥지화석관, 기증품전시실</u></p> <p>2.·3. (현행과 같음)</p> <p><u>제6조의2(관람료의 감액) ①</u> 목포시 관광지 및 관광시설에 관한 입장료, 관람료 등의 통합이용권을 발행할 경우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다.</p> <p>② <u>전라남도 및 전라남도 내 기</u></p> |

제7조(무료관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1. ~ 8. (생략)
- 9. 6세 미만의 취약 전 아동과 주민등록증 등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

10. ~ 17. (생략)

② (생략)

제21조(전시품 구입) ① (생략)

제7장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제41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시장은 박물관 시설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

초 자치단체의 관광축제 및 행사 등과 연계하여 우리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지역관광 패키지 상품 및 플랫폼 개발 운영 시 협약을 통하여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다.

제7조(무료관람) ① -----

-----.

1. ~ 8. (현행과 같음)

9. ----- 취학 -----

10. ~ 1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전시품 구입) (현행 제1항과 같음)

제7장 자원봉사자 및 도슨트 모집 및 운용

제41조(자원봉사자 및 도슨트 모집 및 운용) ① -----

- 자원봉사자 및 도슨트-----
-----.

②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

관람료(제6조 관련)

| 구 분 | 금 액 | | 비 고 |
|-----------------|--------|----------------|---|
| | 개인 | 단체 (20명 이상) | |
| 어 른 | 3,000원 | 2,500원 | •19세 이상 64세 이하 |
| 청소년 · 군 인 | 2,000원 | 1,500원 |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학생증을 소지한 대학생 •하사 이하 군인 및 전 투경찰 순경, 경비교 도 |
| 초등학생 | 1,000원 | 700원 | •7세 이상 12세 이하 |
| 유치원생 | 500원 | 500원 | •6세이상 취학 전 아 동 |

※ 목포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유치원생은 관람료를 전액 면제하며 어른, 청소년·군인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 한다.

② 자원봉사자 및 도슨트 -----
-----.

제42조(자원봉사자 및 도슨트 실비 지급) -----
- 자원봉사자 및 도슨트-----.

[별표 1]

관람료(제6조 관련)

| 구 분 | 금 액 | | 비 고 |
|-----------------|--------|----------------|---|
| | 개인 | 단체 (20명 이상) | |
| 어 른 | 3,000원 | 2,500원 | •19세 이상 64세 이하 |
| 청소년 · 군 인 | 2,000원 | 1,500원 |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학생증을 소지한 대학 생 •하사 이하 군인 |
| 초등학생 | 1,000원 | 700원 | •7세 이상 12세 이하 |
| 유치원생 | 500원 | 500원 | •6세이상 취학 전 아 동 |

※ 목포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유치원생은 관람료를 전액 면제하며 어른, 청소년·군인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서를 제시한 경우로 나이계산 기준은 관람년도-출생년도로 한다.

[별표 1]〈개정 2005·4·18, 2006·12·18, 2008·2·18, 2008·7·28, 2009·6·1, 2015·2·2〉

관람료(제6조 관련)

| 구 분 | 금 액 | | 비 고 |
|-------------------|--------|----------------|---|
| | 개인 | 단체 (20명 이상) | |
| 어 른 | 3,000원 | 2,500원 | • 19세 이상 64세 이하 |
| 청 소 년 · 군 인 | 2,000원 | 1,500원 | •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 학생증을 소지한 대학생 • 하사 이하 군인 및 전투경찰 순경, 경비 교도 |
| 초 등 학 생 | 1,000원 | 700원 | • 7세 이상 12세 이하 |
| 유 치 원 생 | 500원 | 500원 | • 6세 이상 취학 전 아동 |

※ 목포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 유치원생은 관람료를 전액 면제하며 어른, 청소년·군인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제시한 경우로 나이 계산 기준은 관람년도 - 출생년도로 한다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료

목포시 조례 제 3712 호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삼학로 92번길 98번지”를 “삼학로92번길 98(산정동)”로 한다.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관람료의 감액) ① 목포시 관광지 및 관광시설에 관한 입장료, 관람료 등의 통합이용권을 발행할 경우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다.

②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 내 기초 자치단체의 관광축제 및 행사 등과 연계하여 우리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지역관광 패키지 상품 및 플랫폼 개발 운영 시 협약을 통하여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9호 중 “취약”을 “취학”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원봉사자”를 “자원봉사자 및 도슨트”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1의 청소년 · 군인의 비고란 중 “군인 및 전투경찰 순경, 경비교도”를 “군인”으로 하고, 같은 표 단서 중 “신분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 한다”을 “신분증서를 제시한 경우로 나이계산 기준은 관람년도-출생년도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람료(제5조 관련)

| 구 분 | 금 액 | | 비 고 |
|-------------------|--------|----------------|---|
| | 개인 | 단체 (20명 이상) | |
| 어 른 | 3,000원 | 2,500원 | • 19세 이상 64세 이하 |
| 청 소 년 · 군 인 | 2,000원 | 1,500원 | •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 학생증을 소지한 대학생 • 하사 이하 군인 및 전투경찰 순경, 경비 교도 |
| 초 등 학 생 | 1,000원 | 700원 | • 7세 이상 12세 이하 |
| 유 치 원 생 | 500원 | 500원 | • 6세이상 취학 전 아동 |

※ 목포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유치원생은 관람료를 전액 면제하며 어른, 청소년·군인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제시한 경우로 나이 계산 기준은 관람년도 - 출생년도로 한다.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3일

목 포 시 장 박 홍 료

목포시 규칙 제 1855 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제2조 관련)

| 직급별 \ 기관별 | 계 | 본청 | 의회 사무국 | 직속 | 사업소 | 동 | |
|-----------|-------|-------|-----------|----|-----|-----|-----|
| 총 계 | 1,374 | 689 | 35 | 82 | 232 | 336 | |
| 정무직 | 계 | 1 | 1 | 0 | 0 | 0 | |
| | 시장 | 1 | 1 | | | | |
| 일반직 | 계 | 1,353 | 681 | 35 | 82 | 219 | 336 |
| | 3급 | 1 | 1 | | | | |
| | 4급 | 9 | 5 | 1 | 1 | 2 | 0 |
| | 5급 | 71 | 31 | 3 | 3 | 11 | 23 |
| | 6급 | 271 | 155 | 5 | 15 | 49 | 47 |
| | 7급 | 331 | 191 | 18 | 18 | 51 | 53 |
| | 8급 | 348 | 149 | 7 | 31 | 59 | 102 |
| | 9급 | 322 | 149 | 1 | 14 | 47 | 111 |
| 연구직 | 계 | 17 | 4 | 0 | 0 | 13 | 0 |
| | 연구관 | 0 | | | | | |
| | 연구사 | 17 | 4 | 0 | 0 | 13 | 0 |
| 지도직 | 계 | 3 | 3 | 0 | 0 | 0 | 0 |
| | 지도관 | 0 | | | | | |
| | 지도사 | 3 | 3 | 0 | 0 | 0 | 0 |

[별표 2]

목포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 직종별 | 직급 | 직렬별 | 기관별 | 합계 | 본청 | 의회 사무국 | 직속 기관 | 사업 소 | 동 |
|-----|----|-----------------|-----|------|-----|-----------|----------|---------|-----|
| 총계 | | | | 1374 | 689 | 35 | 82 | 232 | 336 |
| 정무직 | | 합계 | | 1 | 1 | | | | |
| | | 시장 | | 1 | 1 | | | | |
| 일반직 | | 일반직 합계 | | 1353 | 681 | 35 | 82 | 219 | 336 |
| | 3급 | 소계 | | 1 | 1 | | | | |
| | | 행정 | | 1 | 1 | | | | |
| | 4급 | 소계 | | 9 | 5 | 1 | 1 | 2 | |
| | | 행정 | | 3 | 3 | | | | |
| | | 기술 | | 1 | | | 1 | | |
| | | 행정+기술 | | 5 | 2 | 1 | | 2 | |
| | 5급 | 소계 | | 71 | 31 | 3 | 3 | 11 | 23 |
| | | 행정 | | 14 | 7 | 1 | | | 6 |
| | | 시설 | | 1 | 1 | | | | |
| | | 행정+사회복지 | | 3 | 1 | | | | 2 |
| | | 행정+해양수산 | | 1 | | | | | 1 |
| | | 행정+공업 | | 1 | | | | 1 | |
| | | 행정+보건 | | 1 | | | | | 1 |
| | | 행정+보건+환경 | | 1 | 1 | | | | |
| | | 행정+시설 | | 18 | 11 | 1 | | 4 | 2 |
| | | 행정+학예연구관 | | 1 | | | | 1 | |
| | |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 | | 1 | | | | | 1 |
| | | 행정+사회복지+보건 | | 2 | 2 | | | | |
| | |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 | 1 | | | | | 1 |
| | | 행정+사회복지+간호 | | 2 | | | | | 2 |
| | | 행정+사회복지+시설 | | 4 | | | | | 4 |
| | | 행정+방송통신 | | 1 | 1 | | | | |
| | | 행정+공업+시설 | | 4 | 2 | | | 2 | |
| | | 행정+공업+농업+간호 | | 1 | | | | | 1 |
| | | 행정+해양수산+시설 | | 2 | 2 | | | | |

| 직종별 | 직급 | 기관별 | | 합계 | 본청 | 의회 사무국 | 직속 기관 | 사업소 | 동 |
|-----|----|----------------|--|-----|-----|-----------|----------|-----|----|
| | | 직렬별 | | | | | | | |
| | | 행정+환경+시설 | | 1 | | | | | 1 |
| | |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 | 1 | | | | | 1 |
| | | 행정+보건+간호 | | 1 | | | 1 | | |
| | | 공업+보건+환경 | | 1 | | | | 1 | |
| | | 공업+환경+시설 | | 1 | | | | 1 | |
| | | 행정+공업+농업+농촌지도관 | | 1 | 1 | | | | |
| | | 행정+공업+녹지+시설 | | 1 | 1 | | | | |
| | |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 | 1 | | 1 | | | |
| | | 행정+공업+환경+시설 | | 2 | 1 | | | 1 | |
| | | 행정+보건+약무+간호 | | 1 | | | 1 | | |
| | | 보건+의무+약무+간호 | | 1 | | | 1 | | |
| | 6급 | 소계 | | 271 | 155 | 5 | 15 | 49 | 47 |
| | | 행정 | | 62 | 34 | 4 | | 2 | 22 |
| | | 세무 | | 7 | 7 | | | | |
| | | 사회복지 | | 9 | 4 | | | | 5 |
| | | 방호 | | 1 | | | | 1 | |
| | | 공업 | | 2 | 1 | | | 1 | |
| | | 해양수산 | | 2 | 2 | | | | |
| | | 보건 | | 1 | | | 1 | | |
| | | 시설 | | 3 | 1 | | | 2 | |
| | | 행정+세무 | | 5 | 3 | | | 1 | 1 |
| | | 행정+사회복지 | | 24 | 12 | | | | 12 |
| | | 행정+전산 | | 7 | 7 | | | | |
| | | 행정+농업+녹지 | | 1 | 1 | | | | |
| | | 사회복지+보건+간호 | | 3 | | | | | 3 |
| | | 행정+환경 | | 5 | 5 | | | | |
| | | 행정+해양수산 | | 3 | 3 | | | | |
| | | 행정+보건 | | 3 | | | 3 | | |
| | | 행정+공업 | | 7 | 4 | | | 3 | |
| | | 행정+시설 | | 47 | 29 | | | 18 | |
| | | 행정+학예연구소 | | 2 | | | | 2 | |
| | | 행정+농촌지도사 | | 1 | | | | | 1 |

| 직종별 | 직급 | 기관별 직렬별 | 합계 | 본청 | 의회 사무국 | 직속 기관 | 사업소 | 동 |
|-----|----|----------------|----|----|-----------|----------|-----|---|
| | | 공업+환경 | 2 | | | | 2 | |
| | | 공업+시설 | 3 | | | | 3 | |
| | | 공업+환경연구소 | 1 | | | | 1 | |
| | | 보건+식품위생 | 1 | | | 1 | | |
| | | 보건+약무 | 1 | | | 1 | | |
| | | 보건+간호 | 2 | | | 2 | | |
| | | 행정+세무+시설 | 1 | 1 | | | | |
| | | 행정+전산+사회복지 | 2 | | | | | 2 |
| | | 행정+사회복지+수의 | 1 | | | | | 1 |
| | | 행정+사회복지+시설 | 1 | 1 | | | | |
| | | 행정+전산+시설 | 7 | 7 | | | | |
| | | 행정+전산+방송통신 | 4 | 3 | 1 | | | |
| | | 행정+공업+시설 | 9 | 8 | | | 1 | |
| | | 행정+공업+학예연구소 | 1 | 1 | | | | |
| | | 행정+녹지+시설 | 4 | 4 | | | | |
| | | 행정+해양수산+시설 | 3 | 3 | | | | |
| | | 행정+보건+식품위생 | 1 | | | 1 | | |
| | | 행정+보건+간호 | 2 | | | 2 | | |
| | | 행정+보건+환경 | 1 | 1 | | | | |
| | | 행정+환경+시설 | 1 | | | | 1 | |
| | | 행정+시설+학예연구소 | 1 | 1 | | | | |
| | | 행정+시설+사무운영 | 1 | | | | 1 | |
| | | 행정+녹지+시설+농촌지도사 | 1 | 1 | | | | |
| | | 공업+보건+환경연구소 | 1 | | | | 1 | |
| | | 공업+전기운영+기계운영 | 1 | | | | 1 | |
| | | 보건+의료기술+간호 | 2 | | | 2 | | |
| | | 의료기술+약무+간호 | 1 | | | 1 | | |
| | | 보건+의료기술+약무 | 1 | | | 1 | | |
| | |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 1 | | | | 1 | |
| | | 행정+농업+환경+농촌지도사 | 1 | 1 | | | | |
| | | 행정+농업+수의+농촌지도사 | 2 | 2 | | | | |
| | | 공업+수의+환경+환경연구소 | 1 | | | | 1 | |

| 직종별 | 직급 | 기관별 직렬별 | 합계 | 본청 | 의회 사무국 | 직속 기관 | 사업소 | 동 |
|-----|----|------------|-----|-----|-----------|----------|-----|----|
| | | 운전 | 4 | 4 | | | | |
| | | 토목운영 | 1 | | | | 1 | |
| | | 건축운영 | 1 | 1 | | | | |
| | | 통신운영 | 1 | 1 | | | | |
| | | 전기운영 | 2 | | | | 2 | |
| | | 기계운영 | 1 | | | | 1 | |
| | | 전기운영+기계운영 | 1 | | | | 1 | |
| | | 전기운영+사무운영 | | | | | | |
| | | 사무운영 | 3 | 2 | | | 1 | |
| | 7급 | 소계 | 331 | 191 | 18 | 18 | 51 | 53 |
| | | 행정 | 112 | 54 | 17 | | 13 | 28 |
| | | 세무 | 22 | 21 | | | 1 | |
| | | 사회복지 | 38 | 19 | | | | 19 |
| | | 전산 | 4 | 2 | 1 | | 1 | |
| | | 방호 | 1 | | | | 1 | |
| | | 공업 | 22 | 10 | | | 12 | |
| | | 농업 | 1 | 1 | | | | |
| | | 녹지 | 3 | 3 | | | | |
| | | 해양수산 | 5 | 5 | | | | |
| | | 보건 | 1 | | | 1 | | |
| | | 의료기술 | | | | | | |
| | | 간호 | 6 | | | 6 | | |
| | | 환경 | 5 | 3 | | | 2 | |
| | | 시설 | 27 | 19 | | | 8 | |
| | | 방송통신 | 3 | 3 | | | | |
| | | 행정+세무 | 3 | 3 | | | | |
| | | 행정+사회복지 | 10 | 4 | | | | 6 |
| | | 행정+전산 | 5 | 4 | | | 1 | |
| | | 행정+공업 | 4 | 4 | | | | |
| | | 행정+농업 | 2 | 2 | | | | |
| | | 행정+녹지 | 2 | 2 | | | | |
| | | 행정+해양수산 | 1 | 1 | | | | |

| 직종별 | 직급 | 기관별 직렬별 | 합계 | 본청 | 의회 사무국 | 직속 기관 | 사업소 | 동 |
|-----|----|------------|-----|-----|-----------|----------|-----|-----|
| | | 행정+간호 | 1 | | | 1 | | |
| | | 행정+환경 | 4 | 4 | | | | |
| | | 행정+시설 | 4 | 3 | | | 1 | |
| | | 행정+식품위생 | 1 | 1 | | | | |
| | | 행정+학예연구소 | 1 | | | | 1 | |
| | | 사회복지+시설 | 1 | 1 | | | | |
| | | 전산+방송통신 | 2 | 2 | | | | |
| | | 공업+시설 | 3 | 2 | | | 1 | |
| | | 공업+환경 | 1 | 1 | | | | |
| | | 보건+식품위생 | 4 | | | 4 | | |
| | | 보건+약무+간호 | 1 | | | 1 | | |
| | | 보건+간호 | 4 | | | 4 | | |
| | | 의료기술+간호 | 1 | | | 1 | | |
| | | 행정+공업+시설 | 1 | 1 | | | | |
| | | 행정+농업+수의 | 1 | 1 | | | | |
| | | 사회복지+보건+간호 | 1 | 1 | | | | |
| | | 운전 | 15 | 14 | | | 1 | |
| | | 위생 | | | | | | |
| | | 토목운영 | | | | | | |
| | | 건축운영 | 1 | | | | 1 | |
| | | 전기운영 | 3 | | | | 3 | |
| | | 기계운영 | 3 | | | | 3 | |
| | | 열관리운영 | 1 | | | | 1 | |
| | | 사무운영 | | | | | | |
| | 8급 | 소계 | 348 | 149 | 7 | 31 | 59 | 102 |
| | | 행정 | 91 | 42 | 2 | | 17 | 30 |
| | | 세무 | 11 | 9 | | | 2 | |
| | | 사회복지 | 57 | 21 | | | | 36 |
| | | 속기 | 3 | | 3 | | | |
| | | 전산 | 4 | 4 | | | | |
| | | 공업 | 19 | 4 | | 1 | 14 | |
| | | 농업 | 1 | 1 | | | | |

| 직종별 | 직급 | 기관별 직렬별 | 합계 | 본청 | 의회 사무국 | 직속 기관 | 사업소 | 동 |
|-----|----|------------|----|----|-----------|----------|-----|----|
| | | 녹지 | 3 | 3 | | | | |
| | | 해양수산 | 4 | 4 | | | | |
| | | 보건 | 5 | | | 5 | | |
| | | 식품위생 | 1 | | | 1 | | |
| | | 의료기술 | 6 | | | 6 | | |
| | | 간호 | 33 | | | 10 | | 23 |
| | | 환경 | 3 | 1 | | | 2 | |
| | | 시설 | 28 | 18 | | | 10 | |
| | | 방송통신 | 3 | 1 | 1 | | 1 | |
| | | 행정+전산+사회복지 | 1 | 1 | | | | |
| | | 행정+사회복지 | 13 | | | | | 13 |
| | | 행정+세무 | 2 | 2 | | | | |
| | | 행정+전산 | 1 | 1 | | | | |
| | | 행정+농업 | 1 | 1 | | | | |
| | | 행정+공업 | 1 | 1 | | | | |
| | | 행정+보건 | 3 | 2 | | 1 | | |
| | | 행정+환경 | 1 | 1 | | | | |
| | | 행정+시설 | 6 | 5 | | | 1 | |
| | | 행정+방재안전 | | | | | | |
| | | 행정+방송통신 | 2 | 2 | | | | |
| | | 전산+방송통신 | 1 | 1 | | | | |
| | | 사회복지+시설 | 1 | 1 | | | | |
| | | 공업+환경 | 3 | 2 | | | 1 | |
| | | 공업+시설 | 4 | 3 | | | 1 | |
| | | 녹지+시설 | 1 | | | | 1 | |
| | | 보건+식품위생 | 2 | | | 2 | | |
| | | 보건+간호 | 3 | 1 | | 2 | | |
| | | 의료기술+간호 | 2 | | | 2 | | |
| | | 시설+방재안전 | | | | | | |
| | | 행정+해양수산+시설 | 1 | 1 | | | | |
| | | 전산+방송통신+시설 | 1 | 1 | | | | |
| | | 사회복지+간호 | 2 | 1 | | 1 | | |

| 직종별 | 직급 | 기관별 직렬별 | 합계 | 본청 | 의회 사무국 | 직속 기관 | 사업소 | 동 |
|-----|----|------------|-----|-----|-----------|----------|-----|-----|
| | | 방호 | | | | | | |
| | | 운전 | 14 | 12 | 1 | | 1 | |
| | | 위생 | | | | | | |
| | | 건축운영 | 1 | 1 | | | | |
| | | 통신운영 | 1 | | | | 1 | |
| | | 전기운영 | 3 | 1 | | | 2 | |
| | | 기계운영 | 4 | | | | 4 | |
| | | 열관리운영 | | | | | | |
| | | 화공운영 | 1 | | | | 1 | |
| | | 사무운영 | | | | | | |
| | 9급 | 소계 | 322 | 149 | 1 | 14 | 47 | 111 |
| | | 행정 | 88 | 41 | | | 4 | 43 |
| | | 세무 | 4 | 4 | | | | |
| | | 전산 | 3 | 3 | | | | |
| | | 사회복지 | 78 | 19 | | | | 59 |
| | | 사서 | 5 | 5 | | | | |
| | | 공업 | 23 | 7 | | | 16 | |
| | | 농업 | 1 | 1 | | | | |
| | | 녹지 | 5 | 5 | | | | |
| | | 해양수산 | 4 | 4 | | | | |
| | | 보건 | 5 | | | 5 | | |
| | | 식품위생 | 1 | | | 1 | | |
| | | 환경 | 4 | 3 | | | 1 | |
| | | 시설 | 23 | 20 | | | 3 | |
| | | 방송통신 | 2 | 1 | | | 1 | |
| | | 행정+사회복지 | 9 | | | | | 9 |
| | | 행정+전산 | 4 | 3 | | | 1 | |
| | | 행정+사서 | 1 | 1 | | | | |
| | | 행정+녹지 | 1 | | | | 1 | |
| | | 행정+해양수산 | 1 | 1 | | | | |
| | | 행정+보건 | 1 | 1 | | | | |
| | | 행정+환경 | 2 | 1 | | | 1 | |

| 직종별 | 직급 | 기관별 | | 합계 | 본청 | 의회 사무국 | 직속 기관 | 사업소 | 동 |
|-----|----|----------|--|----|----|-----------|----------|-----|---|
| | | 직렬별 | | | | | | | |
| | | 행정+시설 | | 6 | 5 | | | 1 | |
| | | 행정+방재안전 | | 1 | 1 | | | | |
| | | 사회복지+보건 | | 3 | | | 3 | | |
| | | 공업+시설 | | 2 | 2 | | | | |
| | | 시설+방재안전 | | 1 | 1 | | | | |
| | | 보건+의료기술 | | 2 | | | 2 | | |
| | | 방호 | | 1 | 1 | | | | |
| | | 운전 | | 20 | 10 | 1 | 3 | 6 | |
| | | 시설관리 | | 2 | 2 | | | | |
| | | 건축운영 | | 1 | | | | 1 | |
| | | 전화상담운영 | | 2 | 2 | | | | |
| | | 전기운영 | | 2 | | | | 2 | |
| | | 기계운영 | | 8 | 1 | | | 7 | |
| | | 화공운영 | | 1 | | | | 1 | |
| | | 사무운영 | | 3 | 2 | | | 1 | |
| | | 행정+전산+시설 | | 1 | 1 | | | | |
| | | 행정+공업+시설 | | 1 | 1 | | | | |
| 연구직 | | 연구사합계 | | 17 | 4 | | | 13 | |
| | | 학예연구사 | | 11 | 3 | | | 8 | |
| | | 환경연구사 | | 5 | | | | 5 | |
| | | 기록연구사 | | 1 | 1 | | | | |
| 지도직 | | 지도사합계 | | 3 | 3 | | | | |
| | | 농촌지도사 | | 3 | 3 | | | | |

신.구조문 대비표(별표1)

| 현 행 | | | | | | | | 개 정 안 | | | | | | | | | | | |
|---|-----|-----|--|-------|-----|----|-----|---|-----|-----|-----|-----|--|-------|-----|----|----|-----|-----|
| (별표1)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 관련) | | | | | | | | (별표1)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 관련) | | | | | | | | | | | |
| 직급별 | | 기관별 | | 계 | 본청 | 의회 | 직속 | 사업소 | 등 | 직급별 | | 기관별 | | 계 | 본청 | 의회 | 직속 | 사업소 | 등 |
| 총 계 | | | | 1,374 | 685 | 35 | 105 | 232 | 317 | 총 계 | | | | 1,374 | 689 | 35 | 82 | 232 | 336 |
| 정무직 | 계 | | | 1 | 1 | | | | | 정무직 | 계 | | | 1 | 1 | 0 | 0 | 0 | 0 |
| | 시장 | | | 1 | 1 | | | | | | 시장 | | | 1 | 1 | | | | |
| 일반직 | 계 | | | 1,353 | 677 | 35 | 105 | 219 | 317 | 일반직 | 계 | | | 1,353 | 681 | 35 | 82 | 219 | 336 |
| | 3급 | | | 1 | 1 | | | | | | 3급 | | | 1 | 1 | | | | |
| | 4급 | | | 9 | 5 | 1 | 1 | 2 | | | 4급 | | | 9 | 5 | 1 | 1 | 2 | 0 |
| | 5급 | | | 71 | 31 | 3 | 3 | 11 | 23 | | 5급 | | | 71 | 31 | 3 | 3 | 11 | 23 |
| | 6급 | | | 271 | 155 | 5 | 15 | 49 | 47 | | 6급 | | | 271 | 155 | 5 | 15 | 49 | 47 |
| | 7급 | | | 327 | 189 | 18 | 18 | 50 | 52 | | 7급 | | | 331 | 191 | 18 | 18 | 51 | 53 |
| | 8급 | | | 350 | 148 | 7 | 54 | 60 | 81 | | 8급 | | | 348 | 149 | 7 | 31 | 59 | 102 |
| | 9급 | | | 324 | 148 | 1 | 14 | 47 | 114 | | 9급 | | | 322 | 149 | 1 | 14 | 47 | 111 |
| 연구직 | 계 | | | 17 | 4 | 0 | 0 | 13 | 0 | 연구직 | 계 | | | 17 | 4 | 0 | 0 | 13 | 0 |
| | 연구관 | | | 0 | | | | | | | 연구관 | | | 0 | | | | | |
| | 연구사 | | | 17 | 4 | | | 13 | | | 연구사 | | | 17 | 4 | 0 | 0 | 13 | 0 |
| 지도직 | 계 | | | 3 | 3 | 0 | 0 | 0 | 0 | 지도직 | 계 | | | 3 | 3 | 0 | 0 | 0 | 0 |
| | 지도관 | | | 0 | | | | | | | 지도관 | | | 0 | | | | | |
| | 지도사 | | | 3 | 3 | | | | | | 지도사 | | | 3 | 3 | 0 | 0 | 0 | 0 |

신.구조문 대비표(별표2)

| 현 행 | | | | | | | | | | 개 정 안 | | | | | | | | | | | |
|---|--------|-----|----|-------|-------|-----|--------|-------|-----------------|---|--------|----|-----|-------|-----|-------|-----|--------|-------|-----|-----|
| (별표2) 목포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 | | | | | | | | | (별표2) 목포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 | | | | | | | | | | |
| 직종별 | 직급 | 기관별 | | | 합계 | 본청 | 의회 사무국 | 직속 기관 | 사업소 | 등 | 직종별 | 직급 | 기관별 | | | 합계 | 본청 | 의회 사무국 | 직속 기관 | 사업소 | 등 |
| | | 직렬별 | | | | | | | | | | | 직렬별 | | | | | | | | |
| 총계 | | | | | 1,374 | 685 | 35 | 105 | 232 | 317 | 총계 | | | | | 1,374 | 689 | 35 | 82 | 232 | 336 |
| 정무직 | 합계 | | | 1 | 1 | | | | | 정무직 | 합계 | | | 1 | 1 | | | | | | |
| | 시장 | | | 1 | 1 | | | | | | 시장 | | | 1 | 1 | | | | | | |
| 일반직 | 일반직 합계 | | | 1,353 | 677 | 35 | 105 | 219 | 317 | 일반직 | 일반직 합계 | | | 1,353 | 681 | 35 | 82 | 219 | 336 | | |
| | 3급 | 소계 | | | 1 | 1 | 0 | 0 | 0 | | 0 | 3급 | 소계 | | | 1 | 1 | | | | |
| 행정 | | | 1 | 1 | | | | | 행정 | | | | 1 | 1 | | | | | | | |
| 4급 | 소계 | | | 9 | 5 | 1 | 1 | 2 | 0 | 4급 | 소계 | | | 9 | 5 | 1 | 1 | 2 | 0 | | |
| | 행정 | | | 3 | 3 | | | | | | 행정 | | | 3 | 3 | | | | | | |
| 기술 | | | 1 | | | 1 | | | 기술 | | | 1 | | | 1 | | | | | | |
| 행정+기술 | | | 5 | 2 | 1 | | 2 | | 행정+기술 | | | 5 | 2 | 1 | | 2 | | | | | |
| 5급 | 소계 | | | 71 | 31 | 3 | 3 | 11 | 23 | 5급 | 소계 | | | 71 | 31 | 3 | 3 | 11 | 23 | | |
| | 행정 | | | 14 | 7 | 1 | | | 6 | | 행정 | | | 14 | 7 | 1 | | | 6 | | |
| 시설 | | | 1 | 1 | | | | | 시설 | | | 1 | 1 | | | | | | | | |
| 행정+사회복지 | | | 3 | 1 | | | | 2 | 행정+사회복지 | | | 3 | 1 | | | | 2 | | | | |
| 행정+해양수산 | | | 1 | | | | | 1 | 행정+해양수산 | | | 1 | | | | | 1 | | | | |
| 행정+공업 | | | 1 | | | | | 1 | 행정+공업 | | | 1 | | | | | 1 | | | | |
| 행정+보건 | | | 1 | | | | | 1 | 행정+보건 | | | 1 | | | | | 1 | | | | |
| 행정+보건+환경 | | | 1 | 1 | | | 0 | | 행정+보건+환경 | | | 1 | 1 | | | | | | | | |
| 행정+시설 | | | 18 | 11 | 1 | | 4 | 2 | 행정+시설 | | | 18 | 11 | 1 | | 4 | 2 | | | | |
| 행정+회계연구관 | | | 1 | | | | 1 | | 행정+회계연구관 | | | 1 | | | | | | | | | |
|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 | | | 1 | | | | | 1 |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 | | | 1 | | | | | 1 | | | | |
| 행정+사회복지+보건 | | | 2 | 2 | | | | | 행정+사회복지+보건 | | | 2 | 2 | | | | | | | | |
|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 | | 1 | | | | | 1 |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 | | 1 | | | | | 1 | | | | |
| 행정+사회복지+간호 | | | 2 | | | | | 2 | 행정+사회복지+간호 | | | 2 | | | | | 2 | | | | |

| 현 행 | | | | | | | | 개 정 안 | | | | | | | | | | | | |
|-----|----|----------------|-----|-----|-----|--------|-------|-------|----|-----|----|-----------------|-----|-----|----|--------|-------|-----|----|---|
| 직종별 | 직급 | 기관별 | | 합계 | 본청 | 의회 사무국 | 직속 기관 | 사업소 | 등 | 직종별 | 직급 | 기관별 | | 합계 | 본청 | 의회 사무국 | 직속 기관 | 사업소 | 등 | |
| | | 직렬별 | 직렬별 | | | | | | | | | 직렬별 | 직렬별 | | | | | | | |
| | | 행정+사회복지+시설 | | 4 | | | | | 4 | | | 행정+학예연구관 | | 1 | | | | 1 | | |
| | | 행정+방송통신 | | 1 | 1 | | | | | | |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 | | 1 | | | | | | 1 |
| | | 행정+공업+시설 | | 4 | 2 | | | 2 | | | | 행정+사회복지+보건 | 2 | 2 | | | | | | |
| | | 행정+공업+농업+간호 | | 1 | | | | | 1 | | |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 1 | | | | | | | 1 |
| | | 행정+해양수산+시설 | | 2 | 2 | | | | | | | 행정+사회복지+간호 | 2 | | | | | | | 2 |
| | | 행정+환경+시설 | | 1 | | | | | 1 | | | 행정+사회복지+시설 | 4 | | | | | | | 4 |
| | |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 | 1 | | | | | 1 | | | 행정+방송통신 | 1 | 1 | | | | | | |
| | | 행정+보건+간호 | | 1 | | | 1 | | | | | 행정+공업+시설 | 4 | 2 | | | | 2 | | |
| | | 공업+보건+환경 | | 1 | 0 | | | 1 | | | | 행정+공업+농업+간호 | 1 | | | | | | | 1 |
| | | 공업+환경+시설 | | 1 | | | | 1 | | | | 행정+해양수산+시설 | 2 | 2 | | | | | | |
| | | 행정+공업+농업+농촌지도관 | | 1 | 1 | | | | | | | 행정+환경+시설 | 1 | | | | | | | 1 |
| | | 행정+공업+녹지+시설 | | 1 | 1 | | | 0 | | | |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 1 | | | | | | | 1 |
| | |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 | 1 | | 1 | | | | | | 행정+보건+간호 | 1 | | | 1 | | | | |
| | | 행정+공업+환경+시설 | | 2 | 1 | | | 1 | | | | 공업+보건+환경 | 1 | | | | | 1 | | |
| | | 행정+보건+약무+간호 | | 1 | | | | 1 | | | | 공업+환경+시설 | 1 | | | | | | 1 | |
| | | 보건+의무+약무+간호 | | 1 | | | | 1 | | | | 행정+공업+농업+농촌지도관 | 1 | 1 | | | | | | |
| 6급 | | 소계 | | 271 | 155 | 5 | 15 | 49 | 47 | | | 행정+공업+녹지+시설 | 1 | 1 | | | | | | |
| | | 행정 | | 62 | 34 | 4 | | 2 | 22 | | |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 1 | | 1 | | | | | |
| | | 세무 | | 7 | 7 | | | | | | | 행정+공업+환경+시설 | 2 | 1 | | | | | 1 | |
| | | 사회복지 | | 9 | 4 | | | | 5 | | | 행정+보건+약무+간호 | 1 | | | | | 1 | | |
| | | 방호 | | 1 | | | | | | | | 보건+의무+약무+간호 | 1 | | | | | 1 | | |
| | | 공업 | | 3 | 1 | | | | | | | 6급 소계 | 271 | 155 | 5 | 15 | 49 | 47 | | |
| | | 해양수산 | | 2 | 2 | | | | | | | 행정 | 62 | 34 | 4 | | | 2 | 22 | |
| | | 보건 | | 1 | | | 1 | | | | | 세무 | 7 | 7 | | | | | | |
| | | 시설 | | 3 | 1 | | | 2 | | | | 사회복지 | 9 | 4 | | | | | 5 | |
| | | 행정+세무 | | 5 | 3 | | | 1 | 1 | | | 방호 | 1 | | | | | | 1 | |
| | | 행정+사회복지 | | 24 | 12 | | | | 12 | | | 공업 | 2 | 1 | | | | | 1 | |
| | | 행정+전산 | | 9 | 8 | 1 | | | | | | 해양수산 | 2 | 2 | | | | | | |
| | | 행정+농업+녹지 | | 1 | 1 | | | 0 | | | | 보건 | 1 | | | | | 1 | | |
| | | 행정+환경 | | 5 | 5 | | | 0 | | | | | | | | | | | | |

| 현 행 | | | | | | | | 개 정 안 | | | | | | | | | | | | |
|-----|----|----------------|-----|----|----|--------|-------|-------|---|-----|----|-------------|-----|----|----|--------|-------|-----|----|---|
| 직종별 | 직급 | 기관별 | | 합계 | 본청 | 의회 사무국 | 직속 기관 | 사업소 | 등 | 직종별 | 직급 | 기관별 | | 합계 | 본청 | 의회 사무국 | 직속 기관 | 사업소 | 등 | |
| | | 직렬별 | 직렬별 | | | | | | | | | 직렬별 | 직렬별 | | | | | | | |
| | | 행정+해양수산 | | 3 | 3 | | | | | | | 사실 | | 3 | 1 | | | 2 | | |
| | | 행정+보건 | | 3 | | | 3 | | | | | 행정+세무 | | 5 | 3 | | | 1 | 1 | |
| | | 행정+공업 | | 7 | 4 | | | 3 | | | | 행정+사회복지 | | 24 | 12 | | | | 12 | |
| | | 행정+시설 | | 50 | 31 | | | 19 | | | | 행정+전산 | | 7 | 7 | | | | | |
| | | 행정+학예연구사 | | 2 | | | | 2 | | | | 행정+농업+녹지 | | 1 | 1 | | | | | |
| | | 행정+농촌지도사 | | 1 | | | | | 1 | | | 사회복지+보건+간호 | | 3 | | | | | | 3 |
| | | 공업+환경 | | 2 | | | | 2 | | | | 행정+환경 | | 5 | 5 | | | | | |
| | | 공업+시설 | | 3 | | | | 3 | | | | 행정+해양수산 | | 3 | 3 | | | | | |
| | | 공업+환경연구사 | | 1 | | | | 1 | | | | 행정+보건 | | 3 | | | 3 | | | |
| | | 보건+식품위생 | | 1 | | | 1 | | | | | 행정+공업 | | 7 | 4 | | | 3 | | |
| | | 보건+약무 | | 1 | | | 1 | | | | | 행정+시설 | | 47 | 29 | | | 18 | | |
| | | 보건+간호 | | 6 | | | 3 | | 3 | | | 행정+학예연구사 | | 2 | | | | 2 | | |
| | | 행정+세무+시설 | | 1 | 1 | | | | | | | 행정+농촌지도사 | | 1 | | | | | | 1 |
| | | 행정+전산+사회복지 | | 2 | | | | | 2 | | | 공업+환경 | | 2 | | | | 2 | | |
| | | 행정+사회복지+수의 | | 1 | | | | | 1 | | | 공업+시설 | | 3 | | | | 3 | | |
| | | 행정+사회복지+시설 | | 1 | 1 | | | | | | | 공업+환경연구사 | | 1 | | | | | | 1 |
| | | 행정+전산+시설 | | 7 | 7 | | | | | | | 보건+식품위생 | | 1 | | | 1 | | | |
| | | 행정+전산+방송통신 | | 2 | 2 | | | | | | | 보건+약무 | | 1 | | | 1 | | | |
| | | 행정+공업+시설 | | 8 | 7 | | | 1 | | | | 보건+간호 | | 2 | | | 2 | | | |
| | | 행정+공업+학예연구사 | | 1 | 1 | | | | | | | 행정+세무+시설 | | 1 | 1 | | | | | |
| | | 행정+녹지+시설 | | 3 | 3 | | | 0 | | | | 행정+전산+사회복지 | | 2 | | | | | | 2 |
| | | 행정+해양수산+시설 | | 3 | 3 | | | | | | | 행정+사회복지+수의 | | 1 | | | | | | 1 |
| | | 행정+보건+식품위생 | | 1 | | | 1 | | | | | 행정+사회복지+시설 | | 1 | 1 | | | | | |
| | | 행정+보건+간호 | | 2 | | | 2 | | | | | 행정+전산+시설 | | 7 | 7 | | | | | |
| | | 행정+보건+환경 | | 1 | 1 | | | 0 | | | | 행정+전산+방송통신 | | 4 | 3 | 1 | | | | |
| | | 행정+환경+시설 | | 1 | | | | 1 | | | | 행정+공업+시설 | | 9 | 8 | | | | | 1 |
| | | 행정+시설+학예연구사 | | 1 | 1 | | | | | | | 행정+공업+학예연구사 | | 1 | 1 | | | | | |
| | | 행정+녹지+시설+농촌지도사 | | 1 | 1 | | | 0 | | | | 행정+녹지+시설 | | 4 | 4 | | | | | |
| | | 공업+보건+환경연구사 | | 1 | | | | 1 | | | | 행정+해양수산+시설 | | 3 | 3 | | | | | |
| | | 보건+의료기술+간호 | | 1 | | | 1 | | | | | 행정+보건+식품위생 | | 1 | | | | 1 | | |

| 현 행 | | | | | | | | 개 정 안 | | | | | | | | | | | | |
|-----|----|----------------|--|-----|-----|--------|-------|-------|----|-----|----|----------------|-----|-----|----|--------|-------|-----|----|----|
| 직종별 | 직급 | 기관별 | | 합계 | 본청 | 의회 사무국 | 작속 기관 | 사업소 | 동 | 직종별 | 직급 | 기관별 | | 합계 | 본청 | 의회 사무국 | 작속 기관 | 사업소 | 동 | |
| | | 직렬별 | | | | | | | | | | 직렬별 | | | | | | | | |
| | | 의료기술+약무+간호 | | 1 | | | 1 | | | | | 행정+보건+간호 | | 2 | | | | 2 | | |
| | | 보건+의료기술+약무 | | 1 | | | 1 | | | | | 행정+보건+환경 | 1 | 1 | | | | | | |
| | |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 | 1 | | | | 1 | | | | 행정+환경+시설 | 1 | | | | | | 1 | |
| | | 행정+농업+환경+농촌지도사 | | 1 | 1 | | | | | | | 행정+시설+화예연구사 | 1 | 1 | | | | | | |
| | | 행정+농업+수의+농촌지도사 | | 2 | 2 | | | | | | | 행정+시설+사무운영 | 1 | | | | | | 1 | |
| | | 공업+수의+환경+환경연구사 | | 1 | | | | 1 | | | | 행정+시설+농촌지도사 | 1 | 1 | | | | | | |
| | | 운전 | | 4 | 4 | | | 0 | | | | 공업+보건+환경연구사 | 1 | | | | | | 1 | |
| | | 토목운영 | | 1 | | | | 1 | | | | 공업+전문연구개발운영 | 1 | | | | | | 1 | |
| | | 건축운영 | | 1 | 1 | | | | | | | 보건+의료기술+간호 | 2 | | | | | | 2 | |
| | | 통신운영 | | 1 | 1 | | | | | | | 의료기술+약무+간호 | 1 | | | | | | 1 | |
| | | 전기운영 | | 2 | | | | 2 | | | | 보건+의료기술+약무 | 1 | | | | | | 1 | |
| | | 기계운영 | | 1 | | | | 1 | | | |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 1 | | | | | | | 1 |
| | | 전기운영+기계운영 | | 1 | | | | 1 | | | | 행정+농업+환경+농촌지도사 | 1 | 1 | | | | | | |
| | | 사무운영 | | 3 | 2 | | | 1 | | | | 행정+농업+수의+농촌지도사 | 2 | 2 | | | | | | |
| | 7급 | 소계 | | 327 | 189 | 18 | 18 | 50 | 52 | | | 공업+수의+환경+환경연구사 | 1 | | | | | | 1 | |
| | | 행정 | | 116 | 56 | 17 | | 13 | 30 | | | 운전 | 4 | 4 | | | | | | |
| | | 세무 | | 22 | 21 | | | 1 | | | | 토목운영 | 1 | | | | | | 1 | |
| | | 사회복지 | | 39 | 20 | | | | 19 | | | 건축운영 | 1 | 1 | | | | | | |
| | | 전산 | | 4 | 2 | 1 | | 1 | | | | 통신운영 | 1 | 1 | | | | | | |
| | | 방호 | | 1 | | | | 1 | | | | 전기운영 | 2 | | | | | | 2 | |
| | | 공업 | | 25 | 13 | | | 12 | | | | 기계운영 | 1 | | | | | | 1 | |
| | | 농업 | | 2 | 2 | | | | | | | 전기운영+기계운영 | 1 | | | | | | 1 | |
| | | 농지 | | 3 | 3 | | | 0 | | | | 전기운영+사무운영 | 1 | | | | | | 1 | |
| | | 해양수산 | | 5 | 5 | | | | | | | 사무운영 | 3 | 2 | | | | | 1 | |
| | | 보건 | | 1 | 0 | | 1 | | | | | 7급 소계 | 331 | 191 | 18 | 18 | 51 | 53 | | |
| | | 의료기술 | | 0 | | | 0 | | | | | 행정 | 112 | 54 | 17 | | | | 13 | 28 |
| | | 간호 | | 7 | | | 7 | | | | | 세무 | 22 | 21 | | | | | 1 | |
| | | 환경 | | 5 | 3 | | | 2 | | | | 사회복지 | 38 | 19 | | | | | | 19 |
| | | 시설 | | 27 | 19 | | | 8 | | | | 전산 | 4 | 2 | 1 | | | | 1 | |
| | | 방송통신 | | 3 | 3 | | | | | | | | | | | | | | | |

| 현 행 | | | | | | | | 개 정 안 | | | | | | | | | | | | |
|-----|----|------------|--|-----|-----|--------|-------|-------|----|-----|----|----------|--|----|----|--------|-------|-----|----|--|
| 직종별 | 직급 | 기관별 | | 합계 | 본청 | 의회 사무국 | 작속 기관 | 사업소 | 동 | 직종별 | 직급 | 기관별 | | 합계 | 본청 | 의회 사무국 | 작속 기관 | 사업소 | 동 | |
| | | 직렬별 | | | | | | | | | | 직렬별 | | | | | | | | |
| | | 행정+세무 | | 3 | 3 | | | | | | | 방호 | | 1 | | | | | 1 | |
| | | 행정+사회복지 | | 6 | 3 | | | | 3 | | | 공업 | | 22 | 10 | | | | 12 | |
| | | 행정+전산 | | 4 | 4 | | | | | | | 농업 | | 1 | 1 | | | | | |
| | | 행정+공업 | | 3 | 3 | | | | | | | 농지 | | 3 | 3 | | | | | |
| | | 행정+농업 | | 1 | 1 | | | | | | | 해양수산 | | 5 | 5 | | | | | |
| | | 행정+농지 | | 1 | 1 | | | 0 | | | | 보건 | | 1 | | | | 1 | | |
| | | 행정+해양수산 | | 1 | 1 | | | | | | | 의료기술 | | | | | | | | |
| | | 행정+환경 | | 4 | 4 | | | 0 | | | | 간호 | | 6 | | | | 6 | | |
| | | 행정+시설 | | 3 | 2 | | | 1 | | | | 환경 | | 5 | 3 | | | | 2 | |
| | | 행정+식품위생 | | 1 | 1 | | | | | | | 시설 | | 27 | 19 | | | | 8 | |
| | | 행정+화예연구사 | | 1 | 0 | | | 1 | | | | 방송통신 | | 3 | 3 | | | | | |
| | | 전산+방송통신 | | 2 | 2 | | | | | | | 행정+세무 | | 3 | 3 | | | | | |
| | | 공업+시설 | | 1 | | | | 1 | | | | 행정+사회복지 | | 10 | 4 | | | | 6 | |
| | | 공업+환경 | | 1 | 1 | | | 0 | | | | 행정+전산 | | 5 | 4 | | | | 1 | |
| | | 보건+식품위생 | | 4 | | | | 4 | | | | 행정+공업 | | 4 | 4 | | | | | |
| | | 보건+약무+간호 | | 1 | | | | 1 | | | | 행정+농업 | | 2 | 2 | | | | | |
| | | 보건+간호 | | 4 | 0 | | | 4 | | | | 행정+농지 | | 2 | 2 | | | | | |
| | | 의료기술+간호 | | 1 | | | | 1 | | | | 행정+해양수산 | | 1 | 1 | | | | | |
| | | 행정+공업+시설 | | 1 | 1 | | | | | | | 행정+간호 | | 1 | | | | 1 | | |
| | | 사회복지+보건+간호 | | 1 | 1 | | | | | | | 행정+환경 | | 4 | 4 | | | | | |
| | | 운전 | | 15 | 14 | 0 | | 1 | | | | 행정+시설 | | 4 | 3 | | | | 1 | |
| | | 위생 | | 0 | 0 | | | 0 | | | | 행정+식품위생 | | 1 | 1 | | | | | |
| | | 토목운영 | | 0 | | | | 0 | | | | 행정+화예연구사 | | 1 | | | | | 1 | |
| | | 건축운영 | | 1 | | | | 1 | | | | 사회복지+시설 | | 1 | 1 | | | | | |
| | | 전기운영 | | 3 | | | | 3 | | | | 전산+방송통신 | | 2 | 2 | | | | | |
| | | 기계운영 | | 3 | | | | 3 | | | | 공업+시설 | | 3 | 2 | | | | 1 | |
| | | 열관리운영 | | 1 | | | | 1 | | | | 공업+환경 | | 1 | 1 | | | | | |
| | | 사무운영 | | 0 | | | | | | | | 보건+식품위생 | | 4 | | | | | 4 | |
| | 8급 | 소계 | | 350 | 148 | 7 | 54 | 60 | 81 | | | 보건+약무+간호 | | 1 | | | | | 1 | |
| | | 행정 | | 94 | 45 | 2 | | 17 | 30 | | | 보건+간호 | | 4 | | | | | 4 | |

| 현 행 | | | | | | | | 개 정 안 | | | | | | | | |
|-----|----|------------|----|------------|----------|-----|----|-------|----|------------|------------|------------|----------|-----------|-----------|------------|
| 직종별 | 직급 | 기관별 | | 의 회 사무국 | 직속 기관 | 사업소 | 등 | 직종별 | 직급 | 기관별 | | 의 회 사무국 | 직속 기관 | 사업소 | 등 | |
| | | 직렬별 | 합계 | | | | | | | 본청 | 직렬별 | | | | | 합계 |
| | | 세무 | 11 | 9 | | 2 | | | | | | | | | | |
| | | 사회복지 | 57 | 20 | | | 37 | | | 의료기술+간호 | 1 | | | 1 | | |
| | | 속기 | 3 | | 3 | | | | | 행정+공업+시설 | 1 | 1 | | | | |
| | | 전산 | 4 | 4 | | | | | | 행정+농업+수의 | 1 | 1 | | | | |
| | | 공업 | 22 | 7 | | 1 | 14 | | | 사회복지+보건+간호 | 1 | 1 | | | | |
| | | 농업 | 1 | 1 | | | | | | 운전 | 15 | 14 | | | 1 | |
| | | 녹지 | 4 | 3 | | | 1 | | | 위생 | | | | | | |
| | | 해양수산 | 4 | 4 | | | | | | 토목운영 | | | | | | |
| | | 보건 | 5 | | | 5 | | | | 건축운영 | 1 | | | | 1 | |
| | | 식품위생 | 1 | | | 1 | | | | 전기운영 | 3 | | | | 3 | |
| | | 의료기술 | 6 | | | 6 | | | | 기계운영 | 3 | | | | 3 | |
| | | 간호 | 34 | 1 | | 33 | | | | 열린리운영 | 1 | | | | 1 | |
| | | 환경 | 3 | 1 | | | | | | 사무운영 | | | | | | |
| | | 시설 | 29 | 19 | | | 10 | | | 8 | | | | | | |
| | | 방송통신 | 4 | 2 | 1 | | 1 | | | 급 | | | | | | |
| | | 행정+전산+사회복지 | 1 | 1 | | | | | | 소계 | 348 | 149 | 7 | 31 | 59 | 102 |
| | | 행정+사회복지 | 13 | | | | 13 | | | 행정 | 91 | 42 | 2 | | 17 | 30 |
| | | 행정+세무 | 2 | 2 | | | | | | 세무 | 11 | 9 | | | 2 | |
| | | 행정+전산 | 0 | | | | | | | 사회복지 | 57 | 21 | | | | 36 |
| | | 행정+농업 | 1 | 1 | | | | | | 속기 | 3 | | 3 | | | |
| | | 행정+공업 | 1 | 1 | | | | | | 전산 | 4 | 4 | | | | |
| | | 행정+보건 | 2 | 1 | | 1 | | | | 공업 | 19 | 4 | | 1 | 14 | |
| | | 행정+환경 | 1 | 1 | | | | | | 농업 | 1 | 1 | | | | |
| | | 행정+시설 | 6 | 5 | | | 1 | | | 녹지 | 3 | 3 | | | | |
| | | 행정+방재안전 | 0 | | | | | | | 해양수산 | 4 | 4 | | | | |
| | | 전산+방송통신 | 1 | 1 | | | | | | 보건 | 5 | | | 5 | | |
| | | 공업+환경 | 3 | 2 | | | 1 | | | 식품위생 | 1 | | | 1 | | |
| | | 공업+시설 | 1 | | | | 1 | | | 의료기술 | 6 | | | 6 | | |
| | | 보건+식품위생 | 2 | | | 2 | | | | 간호 | 33 | | | 10 | | 23 |
| | | 보건+간호 | 3 | 1 | | 2 | | | | 환경 | 3 | 1 | | | 2 | |
| | | | | | | | | | | 시설 | 28 | 18 | | | 10 | |
| | | | | | | | | | | 방송통신 | 3 | 1 | 1 | | 1 | |

| 현 행 | | | | | | | | 개 정 안 | | | | | | | | |
|-----|----|------------|------------|------------|----------|-----------|-----------|------------|----|------------|-----|------------|----------|-----|---|----|
| 직종별 | 직급 | 기관별 | | 의 회 사무국 | 직속 기관 | 사업소 | 등 | 직종별 | 직급 | 기관별 | | 의 회 사무국 | 직속 기관 | 사업소 | 등 | |
| | | 직렬별 | 합계 | | | | | | | 본청 | 직렬별 | | | | | 합계 |
| | | 의료기술+간호 | 2 | | | 2 | | | | 행정+전산+사회복지 | 1 | 1 | | | | |
| | | 시설+방재안전 | 0 | | | | | | | 행정+사회복지 | 13 | | | | | 13 |
| | | 행정+해양수산+시설 | 1 | 1 | | | | | | 행정+세무 | 2 | 2 | | | | |
| | | 전산+방송통신+시설 | 1 | 1 | | | | | | 행정+전산 | 1 | 1 | | | | |
| | | 사회복지+간호 | 1 | | | 1 | | | | 행정+농업 | 1 | 1 | | | | |
| | | 방호 | 0 | | | | | | | 행정+공업 | 1 | 1 | | | | |
| | | 운전 | 14 | 12 | 1 | | 1 | | | 행정+보건 | 3 | 2 | | 1 | | |
| | | 위생 | 0 | 0 | | | | | | 행정+환경 | 1 | 1 | | | | |
| | | 건축운영 | 1 | 1 | | | | | | 행정+시설 | 6 | 5 | | | 1 | |
| | | 통신운영 | 1 | | | | 1 | | | 행정+방재안전 | | | | | | |
| | | 전기운영 | 3 | 1 | | | 2 | | | 행정+방송통신 | 2 | 2 | | | | |
| | | 기계운영 | 4 | 0 | | | 4 | | | 전산+방송통신 | 1 | 1 | | | | |
| | | 열린리운영 | 0 | | | | | | | 사회복지+시설 | 1 | 1 | | | | |
| | | 화공운영 | 1 | | | | 1 | | | 공업+환경 | 3 | 2 | | | 1 | |
| | | 사무운영 | 2 | | | | 1 | 1 | | 공업+시설 | 4 | 3 | | | 1 | |
| | | 9급 | 324 | 148 | 1 | 14 | 47 | 114 | | 녹지+시설 | 1 | | | 1 | | |
| | | 행정 | 91 | 42 | | | 5 | 44 | | 보건+식품위생 | 2 | | | 2 | | |
| | | 세무 | 4 | 4 | | | | | | 보건+간호 | 3 | 1 | | | 2 | |
| | | 전산 | 5 | 5 | | | | | | 의료기술+간호 | 2 | | | | 2 | |
| | | 사회복지 | 83 | 17 | | 3 | | 63 | | 시설+방재안전 | | | | | | |
| | | 사서 | 5 | 5 | | | | | | 행정+해양수산+시설 | 1 | 1 | | | | |
| | | 공업 | 25 | 9 | | | 16 | | | 전산+방송통신+시설 | 1 | 1 | | | | |
| | | 농업 | 2 | 2 | | | | | | 사회복지+간호 | 2 | 1 | | 1 | | |
| | | 녹지 | 6 | 6 | | | 0 | | | 방호 | | | | | | |
| | | 해양수산 | 4 | 4 | | | | | | 운전 | 14 | 12 | 1 | | 1 | |
| | | 보건 | 5 | | | 5 | | | | 위생 | | | | | | |
| | | 식품위생 | 1 | | | 1 | | | | 건축운영 | 1 | 1 | | | | |
| | | 환경 | 4 | 3 | | | 1 | | | 통신운영 | 1 | | | | 1 | |
| | | 시설 | 24 | 21 | | | 3 | | | 전기운영 | 3 | 1 | | | 2 | |
| | | 방송통신 | 2 | 1 | | | 1 | | | 기계운영 | 4 | | | | 4 | |

| 현행 | | | | | | | | 개정안 | | | | | | | | |
|-----|----|---------|-----|-----------|----------|-----|----|-----|----|-----|----|-----------|----------|-----|---|----|
| 직종별 | 직급 | 기관별 | | 의회 사무국 | 직속 기관 | 사업소 | 등 | 직종별 | 직급 | 기관별 | | 의회 사무국 | 직속 기관 | 사업소 | 등 | |
| | | 직렬별 | 합계 | | | | | | | 본청 | 합계 | | | | | 본청 |
| | | 행정+사회복지 | 7 | | | | | | | | | | | | | |
| | | 행정+전산 | 2 | 2 | | | | | | | | | | 1 | | |
| | | 행정+사서 | 1 | 1 | | | | | | | | | | | | |
| | | 행정+녹지 | 1 | | | 1 | | | | | | | | | | |
| | | 행정+해양수산 | 1 | 1 | | | | | | | | | | | | |
| | | 행정+보건 | 1 | 1 | | | | | | | | | | | | |
| | | 행정+환경 | 2 | 1 | | 1 | | | | | | | | | | |
| | | 행정+시설 | 4 | 3 | | 1 | | | | | | | | | | |
| | | 행정+방재안전 | 1 | 1 | | | | | | | | | | | | |
| | | 시설+방재안전 | 1 | 1 | | | | | | | | | | | | |
| | | 보건+의료기술 | 2 | | | 2 | | | | | | | | | | |
| | | 방호 | 1 | 1 | | | | | | | | | | | | |
| | | 운전 | 20 | 10 | 1 | 3 | 6 | | | | | | | | | |
| | | 시설관리 | 2 | 2 | | 0 | | | | | | | | | | |
| | | 건축운영 | 1 | | | 1 | | | | | | | | | | |
| | | 전화상담운영 | 2 | 2 | | | | | | | | | | | | |
| | | 전기운영 | 2 | | | 2 | | | | | | | | | | |
| | | 기계운영 | 8 | 1 | | 7 | | | | | | | | | | |
| | | 화공운영 | 1 | | | 1 | | | | | | | | | | |
| | | 사무운영 | 3 | 2 | | 1 | | | | | | | | | | |
| 연구직 | | 연구사합계 | 17 | 4 | 0 | 0 | 13 | 0 | | | | | | | | |
| | | 학예연구사 | 11 | 3 | | | 8 | | | | | | | | | |
| | | 환경연구사 | 5 | | | | 5 | | | | | | | | | |
| | | 기록연구사 | 1 | 1 | | | | | | | | | 1 | | | |
| 지도직 | | 지도사합계 | 3 | 3 | 0 | 0 | 0 | 0 | | | | | | | | |
| | | 농촌지도사 | 3 | 3 | | | 0 | | | | | | | | | |
| | | 열린리운영 | | | | | | | | | | | | | | |
| | | 화공운영 | | | | | | | 1 | | | | | | | |
| | | 사무운영 | | | | | | | | | | | | | | |
| | 9급 | 소계 | 322 | 149 | 1 | 14 | 47 | 111 | | | | | | | | |
| | | 행정 | 88 | 41 | | | 4 | 43 | | | | | | | | |
| | | 세무 | 4 | 4 | | | | | | | | | | | | |
| | | 전산 | 3 | 3 | | | | | | | | | | | | |
| | | 사회복지 | 78 | 19 | | | | 59 | | | | | | | | |
| | | 사서 | 5 | 5 | | | | | | | | | | | | |
| | | 공업 | 23 | 7 | | | 16 | | | | | | | | | |
| | | 농업 | 1 | 1 | | | | | | | | | | | | |
| | | 녹지 | 5 | 5 | | | | | | | | | | | | |
| | | 해양수산 | 4 | 4 | | | | | | | | | | | | |
| | | 보건 | 5 | | | 5 | | | | | | | | | | |
| | | 식품위생 | 1 | | | 1 | | | | | | | | | | |
| | | 환경 | 4 | 3 | | | 1 | | | | | | | | | |
| | | 시설 | 23 | 20 | | | 3 | | | | | | | | | |
| | | 방송통신 | 2 | 1 | | | 1 | | | | | | | | | |
| | | 행정+사회복지 | 9 | | | | | 9 | | | | | | | | |
| | | 행정+전산 | 4 | 3 | | | | 1 | | | | | | | | |
| | | 행정+사서 | 1 | 1 | | | | | | | | | | | | |
| | | 행정+녹지 | 1 | | | | | 1 | | | | | | | | |
| | | 행정+해양수산 | 1 | 1 | | | | | | | | | | | | |
| | | 행정+보건 | 1 | 1 | | | | | | | | | | | | |
| | | 행정+환경 | 2 | 1 | | | | 1 | | | | | | | | |
| | | 행정+시설 | 6 | 5 | | | | 1 | | | | | | | | |
| | | 행정+방재안전 | 1 | 1 | | | | | | | | | | | | |
| | | 사회복지+보건 | 3 | | | | | 3 | | | | | | | | |
| | | 공업+시설 | 2 | 2 | | | | | | | | | | | | |

| 현행 | | | | | | | | 개정안 | | | | | | | | |
|-----|----|----------|----|-----------|----------|-----|----|-----|----|-----|----|-----------|----------|-----|---|----|
| 직종별 | 직급 | 기관별 | | 의회 사무국 | 직속 기관 | 사업소 | 등 | 직종별 | 직급 | 기관별 | | 의회 사무국 | 직속 기관 | 사업소 | 등 | |
| | | 직렬별 | 합계 | | | | | | | 본청 | 합계 | | | | | 본청 |
| | | 시설+방재안전 | 1 | 1 | | | | | | | | | | | | |
| | | 보건+의료기술 | 2 | | | 2 | | | | | | | | | | |
| | | 방호 | 1 | 1 | | | | | | | | | | | | |
| | | 운전 | 20 | 10 | 1 | 3 | 6 | | | | | | | | | |
| | | 시설관리 | 2 | 2 | | | | | | | | | | | | |
| | | 건축운영 | 1 | | | 1 | | | | | | | | | | |
| | | 전화상담운영 | 2 | 2 | | | | | | | | | | | | |
| | | 전기운영 | 2 | | | 2 | | | | | | | | | | |
| | | 기계운영 | 8 | 1 | | 7 | | | | | | | | | | |
| | | 화공운영 | 1 | | | 1 | | | | | | | | | | |
| | | 사무운영 | 3 | 2 | | 1 | | | | | | | | | | |
| | | 행정+전산+시설 | 1 | 1 | | | | | | | | | | | | |
| | | 행정+공업+시설 | 1 | 1 | | | | | | | | | | | | |
| 연구직 | | 연구사합계 | 17 | 4 | | | 13 | | | | | | | | | |
| | | 학예연구사 | 11 | 3 | | | 8 | | | | | | | | | |
| | | 환경연구사 | 5 | | | | 5 | | | | | | | | | |
| | | 기록연구사 | 1 | 1 | | | | | | | | | | | | |
| 지도직 | | 지도사합계 | 3 | 3 | | | | | | | | | | | | |
| | | 농촌지도사 | 3 | 3 | | | | | | | | | | | | |